

「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9. 4(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2. 9. 24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12. 9. 24(월)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기획감사실장)

-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군의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- 군정소식지(안, 제3조 ~ 제9조)
 - 군정소식지의 명칭, 내용, 군민기자 운영 등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- 군정방송(안, 제10조 ~ 제13조)
 - 군정방송의 제작, 내용, 운영요원 등 군정방송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- 홍보대사(안, 제14조 ~ 제17조)
 - 홍보대사의 임무, 위촉, 해촉,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군정소식지, 군정방송 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안 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매월 발행하는 군정소식지의 명칭 및 발행, 군민기자 위·해촉 등에 대한 사항과
 - 군정방송의 제작, 운영요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 - 전문가 및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그동안 발행하던 군정소식지의 체계적인 제작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하면서, 군정방송 및 홍보대사 위·해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 - 다만, 지역 문화관광 축제를 비롯해 농특산물 홍보 등에 있어 지역언론 위주의 소극적인 홍보방식에서 탈피해 좀더 공격적이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홍보활성화 조례안 1부